수임자인 배우자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소비한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 민법전 제1467조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하는지 여부1)

1. 사건개요

2015년 6월 10일의 Anvers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고가 벨기에 파기원에 제기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는 부부이며, 선결문제를 발생시킨 사건은 이혼 후의 재산의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파기원에서 원고는 민법전 제1993조2)가 아닌 민법전 제1467조3)이 적용됨에 따라, 수임자는 위임자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사무처리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법원의 결정은 민법전 제1467조 및 제1993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파기원은 민법전 제1467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익은 위임자의 이익 또는 부부생활을 위해 소비되었으며, 그 결과 수임자는 더 이상 책임이었다는 정직한 관리(gestion honnête)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추정(présomption irréfragable)에 근거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파기원은 수임자의 증명(justification)을 면제하는 것은 민법전 제1993조에 근거하여수임자가 제공해야 하는 증명과 관련하여 조화될 수 없는 차별적 취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파기원은 민법전 제1467조가 헌법 제10조4) 및 제11조5)에 합치되

¹⁾ Arrêt n° 58/2018 du 17 mai 2018.

²⁾ 벨기에 민법전 제1993조는 "모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사무로 인하여 수령한 모든 것을 인도하여야 하며, 비록 수임인이 수령한 것이 위임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³⁾ 벨기에 민법전 제1467조는 "일방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의 관리를 타방배우자에게 맡겼을 때, 타방배우자는 일 방배우자의 요구 또는 법정부부재산제가 해소되는 경우에,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 소비된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⁴⁾ 벨기에 헌법 제10조 "국가 내에서 어떠한 신분적 차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벨기에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벨기에 국민이 아니면 민사적, 군사적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법률로써 예외를 인정

는지의 선결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벨기에 민법전 제1467조: "일방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의 관리를 타방배우자에게 맡겼을 때, 타방배우자는 일방배우자의 요구 또는 법정부부재산제가해소되는 경우에,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 소비된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결정요지

- (1) 제1심 법원은 헌법재판소에게 민법전 제1467조가 민법전 제1993조가 규정한 일반적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합치되는지를 청구하였다. 즉, 민법 제1993조는 "모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사무로 인하여 수령한 모든 것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반해, 민법전 제1467조는 수임자인 배우자는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그때까지 소비한 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다.
- (2)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는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각자가 관리한다. 그러나, 민법전 제219조6에 따라 일방 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게 부부재산제가 부여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리를 위한 일반 또는

할 수 있다. 남녀평등은 보장된다."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I: 35개국 헌법 전문, 2013, p. 476.

⁵⁾ 벨기에 헌법 제11조 "벨기에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와 자유는 차별 없이 보장된다. 이를 위하여, 법률 및 연방 법률은 특히 이념적 및 철학적 소수자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I : 35개국 헌법 전문, 2013, p. 476.

⁶⁾ 벨기에 민법전 제219조 "배우자 각자는 혼인 중에 부부재산제에 의하여 자신에게 맡겨지거나,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 권한을 대리하도록 일반 또는 특별 위임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 위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위임은 위임에 관한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 (3) 그렇지만,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는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민법전 제1467조는, 수임자인 배우자의 보고의무를 선량한 관리(bonne gestion)의 추정을 위해 면제시키기 때문에, 수임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법의 예외에 해당된다.
- (4) 일반적인 수임자와 수임자인 배우자간의 차별적 취급은 객관적 기준 -즉,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는 위임자와 혼인을 하였는지 여부의 사실 - 에 근거한다.
- (5)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이 입법자가 추구하는 목적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 (6) 수임자인 배우자의 책임의 영역에서 일반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은 배우자 간에 존재하는 신뢰관계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익은 위임자의 이익 또는 부부생활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수임자는더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Cass., 28 avril 2017, C.16.0075.N) 에서 비롯되는 정직한 관리(gestion honnête)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추정 (présomption irréfragable)에 근거하고 있다.
- (7) 그렇지만, 사무처리의 결과를 요구하는 일체의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으며, 재산이 분할된 배우자 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평등과 자율이라는 기본적 규칙에 반한다. 1976년 7월 14일에 법률이 개정된 이후로, 두 배우자는 부부생활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임자인 배우자에 대한 추정(présomption)의 '부인할 수 없는 성격'(caractère

irréfragable)은 이익을 통해 부부생활의 비용을 분담하는 수임자인 배우자의 의무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

수임자가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사무로 인하여 수령한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은 위임의 본질에 속한다. 따라서 일방배우자에게 타방배우자의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임자인 배우자에게 이와 같은 권한의 행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을합리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이 민법전 제1467조와 다르게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은 민법전 제1467조가 공적 질서에 해당되는 규정도 아니고, 강행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된다. 민법전 제1467조에 따르면, 위임은 명시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자인 배우자가 필요한 경우에 민법전 제1467조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우와 같이 묵시적으로도 부여될 수있기 때문이다.

4. 주문

민법전 제1467조는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위반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관한 1989년 1월 6일의 특별법률 제65조기에 따라 2018년 5월 17일에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로 작성 및 선고된다.

⁷⁾ 헌법재판소에 관한 1989년 1월 6일의 특별법률 제65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프랑스어 및 네덜란드어로 작성 및 선고된다.…"